

◆ 강남구고시 제2026-13호

**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(단독주택 1-1)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(2016. 8. 25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15일  
강 남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」으로 결정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
  - 개포동 1199-5번지 대지분할(대지분할가능선 지정)

2. 도시관리계획(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-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

구분	가구 번호	가 구 면적(㎡)	위 치	획 지		비 고
				위 치	면 적(㎡)	
기정	B64	2,478.2	개포동 1199대 외 5필지	개포동 1199-5	495.8	-
				개포동 1199 외 4필지	1,982.4	-
변경	B64	2,478.2	개포동 1199대 외 6필지	개포동 1199-5(가)	243.0	대지분할 가능선 지정(건축협정)
				개포동 1199-5(나)	252.8	
				개포동 1199 외 4필지	1,982.4	-

- 변경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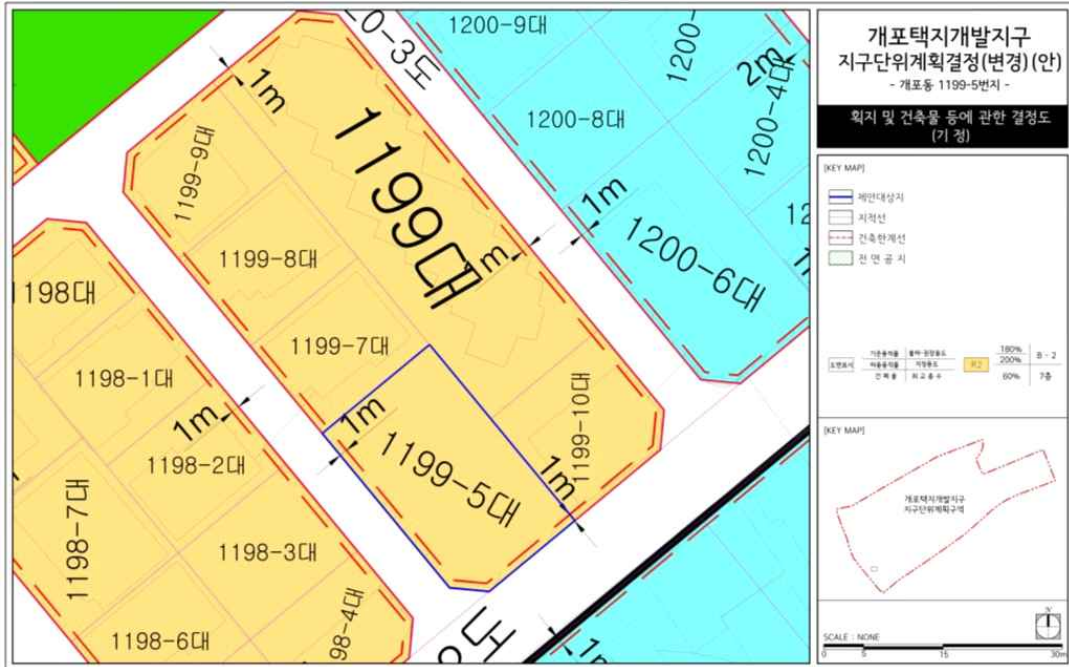
위 치	결정(변경) 내용	변경 사유
개포동 1199-5	대지분할 가능선 지정	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(신설)

※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

3. 관계도면 : 붙임 지형도면 참조

- 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  
[기 정]



[변 경]

